#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6. 27.(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# 가. 서면회의 사유

- o 의결 1) ~ 의결 7)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제14조(서면결의)제1항 제1호에 의거,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 7. 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 3. 21)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.
- o 의결 8) ~ 의결 12)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제14조(서면결의)제1항 제2호에 따른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됨.

#### 나. 의결사항

- **1)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** (2011-38(서)-126)
  - o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44조제2항에 의거, (주)KT, SKT(주)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  - o 주요 내용

#### < 인가 내용 >

구분	협 정 명	비고
1	KT(시내전화)와 KCT(국제전화)간 상호접속협정	신규
2	SKT(이동전화)와 LGU+(국제전화)간 상호접속협정 변경	변경
3	SKT(이동전화)와 SKB(국제전화)간 상호접속협정 변경	변경
4	SKT(이동전화)와 SK텔링크(국제전화)간 상호접속협정 변경	변경

- o 협정의 주요 내용
  - ① KT(시내전화)와 KCT(국제전화)간 상호접속 협정
    - (접속망 구성) 양사간 상호접속망은 KT 구로/혜화 국사의 시외교환기로부터 KCT 구로 국사의 국제교환기까지의 접속회선으로 구성
    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KCT가 제공사업자인 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·통보한 요율\*을 적용
    - \* 시외 A요율(시외 교환) : 18.5694원/분, 시외 B요율(시외 국간) : 22.2036원/분
    - (부대서비스 비용) KCT가 이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국제전화요금은 KT가 대신 징수하고 회수대행수수료(과금액의 3.2%)를 지급키로 양사간 합의
    - ※ '09. 9월 SKT, LGU+도 위와 동일한 요율로 KCT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
  - ② SKT(이동전화)와 국제전화사업자(LGU+, SKB, SK텔링크)간 상호접속협정 변경
    - SKT가 국제전화사업자(LGU+, SKB, SK텔링크)의 국제전화요금을 이용자로부터 대신 정수하고 지급받는 회수대행수수료를 과금액의 2.5%에서 3.2%로 변경키로 당사자간 합의
    - ※ KT(이동전화), LGU+(이동전화)의 타 사업자에 대한 국제전화요금 회수대행수수료도 3.2%임

### 2)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

- (주)티브로드 홀딩스의 (주)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소유 (2011-38(서)-127)
- o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18조제1항과「방송법」제15조의2제1항에 의거, (주)티브로드 홀딩스의 (주)티브로드 노원방송에 대한 주식소유 인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o 주요 내용

< 주식취득 법인 : (주)티브로드 홀딩스(대표자 : 오용일) >

50 IIO	사업 권역	~ O ~ ~ / E 0/ O	LAFA		경영현황('10	년)
주요사업	권역	주요주주(5%이상)	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종합유선방송 (90만명) 초고속인터넷 (22만명)	수도권 충남 전북	· 태광산업㈜ · 이호진 · 이현준 · 태광관광개발㈜	58.99% 24.47% 8.21% 8.08%	639억원	2,362억원 (통신 634억)	213억원

< 피주식취득 법인 : ㈜티브로드 노원방송(대표자: 김종요) >

TO UN	사업	T 0 T T (50( 0 L L L)		경영현황('10	년)
주요사업	권역	주요주주(5%이상) 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종합유선방송 (5.6만명) 초고속인터넷 (2.3만명)	서울시 노원구	· ㈜큐릭스서대문방송 55.0% → 0% · ㈜티브로드홀딩스 0% → 55.0% · ㈜노원케이블티브이 40.0%	57억원	115억원 (통신 49억)	11억원

#### 3) 기간통신사업자 합병·주식소유 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 허가·승인에 관한 건

- ㈜씨엠비 광주방송의 ㈜씨엠비 전남방송 합병 및 ㈜씨엠비 홀딩스의 ㈜씨엠비 광주 방송 주식소유 - (2011-38(서)-128)
- o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18조제1항과「방송법」제15조, 제15조의2에 의거, ㈜씨엠비 광주 방송의 ㈜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한 법인 합병인가 및 변경허가 신청 건과 ㈜씨엠비 홀딩스의 ㈜씨엠비 광주방송 주식소유 인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- o 주요 내용

① 합병 및 피주식취득 법인: ㈜씨엠비 광주방송(대표: 이한성, 이한담, 김태율)

70 IIO	Tronaire	ᄌᄌᄖᄃ	:	경영현황('10년	1)
주요사업	사업권역 	주주변동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종합유선방송 (42.5만명) 초고속인터넷 (1.0만명)	광주광역시	<ul> <li>☆씨엠비홀딩스         <ul> <li>13.72% → 32.29%</li> </ul> </li> <li>☆씨엠비광주미디어         <ul> <li>33.66% → 30.77%</li> </ul> </li> <li>☆씨엠비대전방송             <ul> <li>33.51% → 30.63%</li> </ul> </li> <li>☆씨엠비한강CATV                  <ul> <li>6.90% → 6.31%</li> <li>자기주식 12.21%→ 0%</li> </ul> </li> </ul>	75억원	269억원 (통신 11억)	37억원

② 피합병법인: ㈜씨엠비 전남방송(대표: 이한성, 이한담)

50 II O	TI OI II OI	~ o ~ ~	73	<b>병영현황(</b> '10년	)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주주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종합유선방송 (10.0만명) 초고속인터넷 (0.2만명)	전남권	·㈜씨엠비홀딩스 100%	65억원	88억원 (통신 4억)	16억원

③ 주식취득법인: ㈜씨엠비홀딩스(대표자: 이한담)

주요사업	   사업권역 주요주주(5%이상)		경영현황('10년)		
ᅮᅭᄭᆸ	사업권력	T#TT(3%VIS)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방송통신장비 판매업	-	· 이한담 55% · 이한성 40%	9억원	138억원	16억원

- **4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** (주)서경방송의 (주)산청케이블텔레비젼 합병 (2011-38(서)-129)
  - o「방송법」제15조제1항에 의거, ㈜서경방송의 ㈜산청케이블텔레비젼에 대한 법인합병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① 합병(존속) 법인 : ㈜서경방송(대표자 : 원종록, 윤철지)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(5% 이상)	경영현황('10년 12월)
종합유선방송사업	경남 진주, 사천, 남해, 하동, 산청, 함양	· 윤철지33.30%· 김장하13.52%· 오진호7.86%· 양영종5.32%· 최지호5.32%	· 자본금81억원· 매출액371억원· 영업이익38억원· 당기순이익50억원

② 피합병 법인 : ㈜산청케이블텔레비젼(대표자 : 황상연)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(5% 이상)	경영현황('10년 12월)
전송망 사업 (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제공역무)	경남 산청군 일부	· ㈜서경방송 100%	· 자본금 8.5억원 · 매출액 3.3억원 · 영업이익 △143만원 · 당기순이익 △378만원

- ③ 합병 전후 주주구성: 변동사항 없음
- **5)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**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34개사 (2011-38(서)-130)
  - o「방송법」제77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제이헬로비전 등 3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  - o 주요 내용
  - ① 디지털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 상품 추가: 33개사
    - (주)씨제이헬로비전계열 17개사\*

상 품 명	내 용	이용요금(상한)	미
키즈톡톡 (유료채널)	어린이 교육(영어, 천자문 등)	5,000원	월정액

\* ㈜씨제이헬로비전, ㈜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은평지점, ㈜씨제이헬로비전중부산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중앙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금정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북인천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충남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, ㈜씨제이 헬로비전마산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, ㈜씨제이 헬로비전영동방송, ㈜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 - (주)씨앤앰 계열 16개사\*\*

상 품 명	내 용	이용요금(상한)	비고
아하경제 (부가서비스)	경제, 금융 등	9,000원	월정액
디보플레이스 스쿨 (부가서비스)	어린이 영어교육 등	3,500원	월정액

- \*\* ㈜씨앤앰, ㈜씨앤앰중앙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서서울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용산케이블 티브이, ㈜씨앤앰동서울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중랑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북부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노원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마포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서초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송파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경동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,
- ②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 : (주)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

상 품 명	내 용	승인 조건
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(CH 13개)		승인 신청 시 제출한 주파수 운용 계획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주파수 대역의 50% 이상을 실시간방송 채널로 운용할 것

- \*「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채널운용 방안」('09. 7. 2. 방송통신위원회 보고)에 따라 가입자가 없는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폐지에 따른 승인조건 부과
- 6)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(주)씨엠비동서방송 등 13개사
  - (2011-38(서)-131)
  - o「방송법」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엠비동서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  - o 주요 내용

종합유선방송사업자	변경사항	신청 주요내용
(주)씨엠비 계열 9개사*	운용채널 및 시설변경	디지털방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비 교체
(주)씨앤앰용산케이블티브이		디지털방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비 교체
(주)강원방송		디지털 채널 확대에 따른 장비 신설
(주)동서디지털방송		운용채널 변경에 따른 장비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
(주)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		디지털 채널 확대 및 아날로그 채널 축소에 따른 장비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

\* ㈜씨엠비동서방송, ㈜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, (주)씨엠비대구수성방송, ㈜씨엠비대구동부방송, ㈜씨엠비광주방송, ㈜씨엠비광주방송동부지점, ㈜씨엠비대전방송, (주)씨엠비대전방송동대전 지점, (주)씨엠비전남방송

# 7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2011-38(서)-132) - ㈜씨채널방송 등 4개사

- o「방송법」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㈜씨채널방송 등 4개사의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- o 주요 내용

#### < ㈜씨채널방송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C채널	종교(기독교) (텔레비전)	박종순 황 황	명성교회 (45%)	25억원 (6.3억원)

### < ㈜비트컴퓨터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드림케어티비	의료·건강	조현정	조현정	80.5억원
(DreamcareTV)	(데이터)	전진옥	(26.55%)	(7억원)

# < 대원방송㈜ 변경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애니박스 (ANIBOX)	텔레비전	방송분야	애니메이션	애니메이션, 게임쇼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
#### < 씨제이파워캐스트㈜ 변경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OZIC 최신가요 등	71.0	표이상대	씨제이파워캐스트㈜ (※PP)	<b>씨제이파워캐스트</b> ㈜
30 채널	라디오	법인합병	㈜디지틀온미디어 (※비PP)	( <b>※PP</b> )

# **8) 2011**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관한 건 - (2011-38(서)-133)

o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,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의 증액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.

#### o 주요 내용

- ①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디지털컨버터 지원대상 확대, 안테나 교체 비용 현실화,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콜센터 운영비 및 행정비용에 필요한 소요재원 (5,862백만원) 증액 편성 추진
- ②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은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, 지역간·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초·중등학습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(2,984 백만원) 증액 편성 추진
- ③ 총 소요재원 8,846백만원은 2011년 여유자금 운용재원(48,431백만원)에서 충당토록 함

#### <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개요 >

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당초 (A)	변경안 (B)	증감 (B-A)	주요 증액 내용
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	10,300	16,162		디지털컨버터 설치 지원 및 민원처리를 위한 지원센터·콜센터 운영 비용 지원
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	19,132	22,116	2,984	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초·중등학습 프로 그램 제작 지원
합 계	29,432	38,278	8,846	-

- 9) 신규 라디오방송국(FM) 허가심사 계획(안)에 관한 건 극동광주FM방송국, 교통창원 FM방송국 (2011-38(서)-134)
  - o (재)극동방송이 신청한 광주FM방송국과 도로교통공단이 신청한 창원FM방송국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.
  - o 주요 내용
  - ① 심사대상

신 청 인	신청일자	대표자	신청 방송국명
(재)극동방송	'10. 11. 24	김장환 이사장	극동광주 FM방송국
도로교통공단	'10. 12. 15	주상용 이사장	교통창원 FM방송국

# ② 허가심사위원회 구성(안)

-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

-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

구 분	분 야	비고		
	심사위원장(1)	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		
	방송·미디어 분야(2)	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		
ALLO 01/7)	경영·회계분야(1)	관련학과 교수, 회계사, 관련분야 종사자		
심사위원(7)	기 술 분 야(1)	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		
	시청자·소비자분야(1)	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		
	방통위 사무조직(1)	지상파방송정책과장		

③ 심사기준 및 배점 :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

심사 항목	배 점 (총1천점)	방송법근거
1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	150점	10조1항1호
2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	200점	10조1항2호
3.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	150점	10조1항3호
4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	200점	10조1항4호
5. 재정능력	150점	10조1항5호
6. 기술적 능력	100점	10조1항5호
7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	50점	10조1항6호
8. 신청법인의 최근 5년간 관련법령 위반사례	감점	10조1항7호

<sup>※</sup>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

### ④ 허가여부 결정 기준

-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'허가'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 신청인에 대하여는 '불허' 또는 '조건부 허가'의결

# **10)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고시에 관한 건** - (2011-38(서)-135)

o 한-EU FTA 잠정발효에 대비하여, 방송법 시행령(제57조 제6항)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.

# o 주요 내용

-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·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을 국내제작의 범위에 포함

- ※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 현황: 캐나다('95), EU('10), EFTA('06), 싱가포르('07), 캄보디아('09)
- ·입법예고안 중 제5조 제1항 제1호, 제3호, 제2항 ~ 제6항을 삭제하고
- ·제5조 제1항 제2호(외국과 공동으로 기획·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 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)만 고시
- ※ 규제심사 소요기간(45일) 및 FTA 후속 국내 법령 정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-EU FTA 이행 관련 사항만을 우선 추진

# **11)** 「한·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38(서)-136)

- o 한-EU FTA 잠정발효에 대비하여,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상호인정에 관한 효력·기준 ·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o 주요 내용
- (대상기기) 전파법 및 EU지침의 적용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
- (적용범위)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분야
- (세부절차 등) 적합선언 방법 및 전파연구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
- **12) 기간통신사업의 일부폐지 승인에 관한 건** (주)KT, (주)LGU+, (주)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무선인터넷 서비스 폐지 (2011-38(서)-137)
  - o (주)KT, (주)LGU+, (주)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무선인터넷(B-WLL)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 건에 대해 B-WLL은 광랜 등 유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속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련 장비 공급도 중단된 점, 현재 B-WLL 이용자가 없어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사업 폐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함.

#### < (주)KT, (주)LGU+, (주)SK브로드밴드의 B-WLL 사업현황 >

구	구 분 KT(舊 한국통신)		LGU+(舊 데이콤)	SKB(舊 하나로통신)
사업	사업허가 '99.6월		'99.6월	'99.6월
서비스 기	개시시기	'00.9월	'02.5월	'00.7월
제공	지역	인천, 목포, 부산, 대구	서울	수도권, 대구, 부산, 제주
출인	변금	아 전	190.25억	없음
주파수	(상향)	24.27~24.42GHz	24.60~24.75GHz	24.435~24.585GHz
대역	(하향)	25.50~25.86GHz	26.30~26.66GHz	25.90~26.26GHz
이용자	(최대)	989명('01년)	10명('02년)	35,687명('02년)
현황	(현재)	없음 ('04년이후~현재)	없음 ('05년 이후~현재)	없음 ('09년 이후~현재)
매출액('10) 없음		없음	없음	